

##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

주주 여러분께

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4조에 의거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8년 3월 27일(화요일) 오전 10시 30분 ~
2. 장 소 : 당사 회의실(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-77)
3. 회의목적사항
  - 1) 보고사항
    - (1) 감사보고
    - (2) 영업보고
  - 2) 의결사항
    - 제1호 의안 : 제22기(2017. 1. 1 ~ 2017. 12. 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  
-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결손금 보전 포함)
    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    - 제3호 의안 :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  - 3) 현안 설명 및 논의사항
    - 회생계획안 변제계획 등 이행방안 및 기타 현안

첨 부 : 참석장 및 위임장 --- 1부  
공증용 위임장 --- 1부 끝.

2018년 3월 8일

주식회사 코 캣  
대표이사 배 학 로 (직인생략)

## 정관 변경 신·구 대비표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3조 【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】	①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<u>화성시</u> 에 둔다	①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<u>안성시</u> 에 둔다	본점 이전
제9조 【신주인수권】	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M&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에 성공할 경우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	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<u>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&amp;A 추진 등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</u>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	조항 문구변경 (법원허가 삭제)
	신설	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	표준정관 참조한 조항 신설